2026.02.26.(목) 11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충주시민햇빛발전소 제1호기(용두배수펌프장)

2026 정기대의원총회

충주시민햇빛발전소 제2호기(수안보다목적체육관)

햇빛충주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인 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햇빛충주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늘 아낌없는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주시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이 힘차게 전진하고,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2025년은 성과와 성장이 있었던 한 해이면서도,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으며 여러 여건 속에서 인내하며 기반을 다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충주시민햇빛발전소 제1호기(용두배수펌프장 옥상, 51.46kW)는 준공 1주년을 넘어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2호기 역시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3호기는 발전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개발행위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일부 용량 조정을 거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디게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하나 책임 있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조합원 여러분!
사회적협동조합인 햇빛충주의 주인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입니다. 생각과 노력, 자본을 함께 모을 때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그 가치와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조합원 여러분을 믿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책임 있게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는 재정적 안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제4·제5호기 추진, 조합원 확대, 사회적기업 진입,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닥터 사업, RE100 충주시민클럽 활성화, 시민 환경교육과 컨설팅, 조합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SNS 소통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각의 협동, 노동의 협동, 자본의 협동'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햇빛충주가 되어, 충주의 사회·경제·환경적 기반을 건강하고 건전 ,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착한 전기를 생산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보태고, 청정 충주를 향한 애향의 마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총회를 준비해 주신 임원·이사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대의원 및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희망과 긍정, 열정이 여러분의 일상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이사장 손 창 남

목 차

❖ 정기대의원총회 자료

- 제2차 정기총회 의사록 ---------- 04
- 의안 심의
  - 1호 의안 : 2025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05
  - 2호 의안 : 2025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07
  - 3호 의안 :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에관한 승인의 건 ---------- 17
  - 4호 의안 : 2026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19
  - 5호 의안 : 임원의 선출에 대한 승인의 건 ---------- 24

❖ 대의원 명단 ---------- 31

❖ 정관 ---------- 32

❖ 2025 기록 (사진철) ---------- 40

제2차 정기총회 의사록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2025년 정기대의원총회 의사록

1. 총회 개최 공고일 : 2025. 2. 21. (금요일)

2. 총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5. 3. 6. (목요일) 11시
   나. 장소 :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충주시 상아배이길 84)

3. 참석자
   가. 재적 대의원 : 25명
   - 김경희, 김병덕, 김승우, 김영신, 김주식, 노희경, 박문애, 박해성, 배명한, 손광희, 손창국, 송성석, 송해근, 신언호, 이영섭, 이영주, 이의성, 이정범, 주영욱, 최순옥, 최승호, 최효정, 한경석, 한진상, 홍기황

   나. 참석 대의원 : 19명
   - 김경희, 김병덕, 김승우, 김영신, 김주식, 박해성, 손창국, 송성석, 송해근, 신언호, 이영섭, 이영주, 이의성, 주영욱, 최승호, 최효정, 한경석, 한진상, 홍기황

4.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2024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출자금 확정의 건
   - 제4호 의안. 규약 제정의 건
   - 제5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안)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기타 안건

5. 총회 내용
   가. 이사장 손창남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나.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25명 재적 대의원 중 19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기와 기명날인인 지명
   - 의장이 회의의 기록과 확인을 위한 서기로 오승희를 지명하고, 기명날인인으로는 손창국, 신언호, 이영주를 지명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전원 수락하다.

   라. 전차회의록 확인
   - 의장이 전차회의록에 낭독을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다.
   -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전원 동의로 원안대로 전차회의록을 채택하다.

   마.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 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하다.

   바. 제1호 의안. 2024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의장이 제1호 의안을 상정하고, 감사 신옥선에게 감사보고를 요청하다.
   - 신옥선감사가 감사보고서를 낭독하다.
   - 의장이 이에 대해 질문과 동의 여부를 묻고 전원 동의로 승인하다.

   사. 제2호 의안.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 의장이 제2호 의안을 상정하고, 송해근대의원에게 2024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안)를 요청하다.
   - 송해근대의원이 2024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안)에 대해 보고하다.
   - 의장이 2024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안)에 질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체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아. 제3호 의안. 출자금 확정의 건
   - 의장이 제3호 의안을 상정하고, 한진상대의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한진상대의원이 출자금 확정의 건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이 제3호 안건에 대한 동의를 묻고 전원 동의로 승인하다.

   자. 제4호 의안. 규약 제정의 건
   - 의장이 제4호 의안을 상정하고, 김영신대의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김영신대의원이 규약 제정의 건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이 제4호 안건에 대한 동의를 묻고 전원 동의로 승인하다.

   차. 제5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안) 승인의 건
   - 의장이 제5호 의안을 상정하고, 한경석대의원에게 202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안)을 요청하다.
   - 한경석대의원이 202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안)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이 사업계획에 대해 부연 설명하다.
   - 의장이 202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안)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묻다.
   - 의장이 202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안)에 대해 동의를 묻고 전원 동의로 승인하다.

   카. 제6호 의안. 기타 안건
   - 의장이 기타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하다.

   타. 폐회 선언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조합원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2025년 제2차 정기 (대의원)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 12시 10분)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을 포함한 4인 손창남, 손창국, 신언호, 이영주 4명이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25. 3. 6.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정기대의원총회

이 사 장 손 창 남 (인)
대 의 원 손 창 국 (인)
대 의 원 신 언 호 (인)
대 의 원 이 영 주 (인)

제1호 의안
2025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5년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 승인

제1호 의안
2025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3차 정기총회 감사보고서

본 감사는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하 '햇빛충주'라 한다.) 정관 제53조 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햇빛충주가 1년간(2025.1.1. ~ 12.31) 수행한 업무집행 및 자금 운영 전반을 2026년1월30일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개요

분기별	기간	감사범위	감사자	비고
1/4분기	25.04.15	분기회계 및조합운영전반	신옥선	
2/4분기	25.07.15	분기회계 및조합운영전반	신옥선	
3/4분기	25.10.15	분기회계 및조합운영전반	신옥선	
4/4분기	26.01.15	분기회계 및조합운영전반	신옥선	

감사총평

본 감사인이 사무국과 이근홍세무회계사무소에서 준비한 조합운영 및 회계전반에 대한 서류에 대해 타당성 검토와 객관적 운영 여부를 4회에 걸쳐 감사한 결과, 조합은 지난 한해 동안 제1호기 햇빛발전소 운영 등으로 자립기반의 토대를 다지는 과정에 있으며, 지역 내 에너지소외계층을 위한 LED 등 교체사업 등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나 창업 초기 자립 경영이 쉽지 않은 시기임에도 작은 폭이라도 흑자(당기순이익 ₩1,194,493)로 결산을 보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햇빛충주(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며 특히 한정된 자산 운영 등 조합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합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주신 임직원 및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2월 26일

감사 신 옥 선 (인) 신옥선

제2호 의안
2025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승인

제2호 의안
2025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사 업 보 고

1 충주시민햇빛발전소 1호기(용두배수펌프장) 운영

❑ **설치 및 운영개요**

- 위　　치 : 충주시 용두배수펌프장 옥상
- 시설용량 : 51.46㎾
- 사 업 비 : 85백만원(참여조합원수 : 164명)
- 임 대 료 : 24,600원 / 1년

❑ **운영실적**

- 발 전 량 : 72,899㎾, 공급인증서 109REC 발급
- 발전수입 : 총 14,770,044원, 12REC 보유중
  (SMP 8,376,499원, REC 6,393,545원)
- 지출금액 : 총 1,216,574원(안전관리비 1,200,000원, 전기세 16,574원)
- 차　　액 : 13,553,470원

제2호 의안
2025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2 충주시민햇빛발전소 2호기(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

❑ 공사 개요
- 위　　치 : 수안보 다목적체육관 주차장(수안보면 온천리 163-5)
- 시설용량 : 378Kw　　• 총사업비 : 6억원

❑ 추진 실적

•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제출	01.21
• 1차 펀드 조성 : 30,500,000원, 15인	03.10
• 2차 펀드 조성 : 17,000,000원, 7인	04.01
• 이율변경을 위한 임원 이사회 개최 (당초 : 5% 이율→ 변경 : 3호기펀드와 함께 7% 적용)	09.09
• 전기사업 허가 신청 취하 -> 더 이상 연기신청 어려움	12.19
• 임대료 환급 (기존납부 12,271,640원, 이자 288,020원 총 12,559,660원)	12.30

❑ 향후 계획
- 설치 대상지의 지적공부 정리 등 행정절차 진행 중(충주시)
(임대료 12,271,000원. 50%감경 예정 / 2026년 하반기 추진 예정)

3 충주시민햇빛발전소 3호기(두정 매립지) 설치공사 추진

❑ 공사 개요
- 위　　치 : 두정 쓰레기매립지 일부(수안보면 두정리 200번지 외)
- 시설용량 : 300Kw　　• 총사업비 : 3억9천만원

❑ 추진 실적

• 3호기 사업대상지 확정(충주시의회 승인완료 / 임대료 50% 감경)	
• 공유재산 사용허가 (임대료 납부 : 1,285,220원)	09.16
•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제출	09.24
• 1차 펀드 조성 : 17,500,000원, 10인	10.13
• 발전사업허가증 교부(470.4Kw)	11.06
• 3호기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설명회(산정마을)	11.14
• 3호기 설치계획 변경(안) 공문 발송(충주시 자원순환과) -300Kw	12.23

❑ 향후 계획
- 2026년 상반기 추진

제2호 의안
2025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4 조합의 안정적 기틀마련

❑ **실무인원 확보**
- 시간제(일 3시간) 근무자 1명 확보
- 정부 보조금 폐지 및 자체 수입 부족으로 근무시간 연장 계약 및 추가 인원 미확보

❑ **조합원 증원**
- 조합원 수 : 202명('24.12.31.) →265명(일반 263,기업 2.) - 65명 증원, 2명 탈퇴
- 출자금액 : 39,850,000원 → 48,750,000원 (9,000,000원 증가, 100,000원 환급 예정)
- 조합원 증원 활성화를 위해 감사수당 지급을 이사회 의결하여 조합원 공지(10/24)
  - 가입출자금의 10% 소개자 지급

❑ **조직 및 회의 체계 확대**
- 임원이사 회의 : 9회(1/8, 2/19, 3/24, 4/30, 5/26, 7/16, 9/9, 10/15, 12/22)
- 조합과 햇빛발전에 대한 정보공유
  제2호 3호 발전소 건설을 위한 추진현황 설명과 효율적인 건설방안 숙의

5 에너지복지 / 에너지닥터 사업

❑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 2025. 4월 ~10월
- 개 요 : 에너지소외계층 대상 LED등기구 교체
- 추진실적 : 50가구(교현2동 외 9개 읍·동)

❑ 에너지닥터 사업 추진 — 2025.12월
-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태양광(경로당 등) 일부시설 유지관리 위탁 협의

6 기타 사업

❑ RE100충주시민클럽 회원 증대 (1,333명→1,494명)
- 우륵문화제 기간내 시민 홍보 및 동참 계도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 내 홍보 활동 강화
- 재래시장 쓰레기절감 캠페인 전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대)

❑ 사회적기업으로 진입 위한 심사 ('25. 7월) → 실패 ('25. 9월)

❑ 공공 태양광시설 주변 예초 작업(충주 태양광발전소 2호) — 2025. 8월

❑ 조합 로고변경 브랜드네이밍 사업추진 : 햇빛충주 — 2025. 9월
(지원금12,450,000원 / 자부담 2,075,000원)

Symbol Mark
심볼마크

워드마크는 대내외적으로 햇빛충주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일관된 이미지를 위해 활용시에는 반드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한다.

에너지

자연

신뢰

[개발배경]

햇빛충주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새롭게 CI를 개발하였습니다.

[디자인의도]

사람 형상과 태양을 결합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에너지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뜻한 오렌지 톤을 사용해 생명력과 희망을 전달하며, 에너지 확산과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녹색 삼각형 형태는 사람의 몸을 상징하며, 동시에 자연과 환경을 품는 친환경 가치를 나타내었습니다.

결 산 안

재 무 상 태 표

제 3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2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단위 :원)

과 목	제 3당기		제 2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유 동 자 산		125,722,827		47,786,816
① 당 좌 자 산		125,722,827		47,786,816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101,351,133		31,603,272	
단 기 투 자 자 산	980,000		300,000	
선 급 금	23,421,694		14,481,864	
미 환 급 부 가 세 대 급 금			1,401,710	
② 재 고 자 산				
Ⅱ.비 유 동 자 산		82,779,111		78,069,111
① 투 자 자 산				
② 유 형 자 산		82,779,111		78,069,111
비 품	4,090,909		4,090,909	
시 설 장 치	78,688,202		73,978,202	
③ 무 형 자 산				
④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자 산 총 계		208,501,938		125,855,957
부 채				
Ⅰ.유 동 부 채		163,630,832		91,379,344
미 지 급 금	10,216,538		4,089,486	
예 수 금	68,520		71,430	
부 가 세 예 수 금	1,176,210			
가 수 금	339,543		418,488	
시 민 펀 드 차 입 금	151,800,000		86,800,000	
Ⅱ.비 유 동 부 채				
부 채 총 계		163,630,832		91,379,344
자 본				
Ⅰ.자 본 금		48,850,000		39,650,000
출 자 금	48,850,000		39,650,000	
Ⅱ.자 본 잉 여 금				
Ⅲ.자 본 조 정				
Ⅳ.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Ⅴ.결 손 금		3,978,894		5,173,387
미 처 리 결 손 금	3,978,894		5,173,387	
(당 기 순 이 익)				
당기 : 1,194,493				
전기 : 417,713				
자 본 총 계		44,871,106		34,476,61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08,501,938		125,855,957

제2호 의안
2025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재무상태 요약

항목 (과목)	제2기(2024년)	제3기(2025년)	증감액	증감률
자산총계	125,855,957	208,501,938	+82,645,981	+65.67%
유동자산	47,786,846	125,722,827	+77,935,981	+163.09%
- 현금 및 현금성자산	31,603,272	101,351,133	+69,747,861	+220.70%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78,069,111	82,779,111	+4,710,000	+6.03%
부채총계	91,379,344	163,630,832	+72,251,488	+79.07%
- 시민펀드차입금	86,800,000	151,800,000	+65,000,000	+74.88%
자본총계	34,476,613	44,871,106	+10,394,493	+30.15%
- 자본금 (출자금)	39,650,000	48,850,000	+9,200,000	+23.20%
- 미처리결손금	5,173,387	3,978,894	-1,194,493	-23.09%

자산총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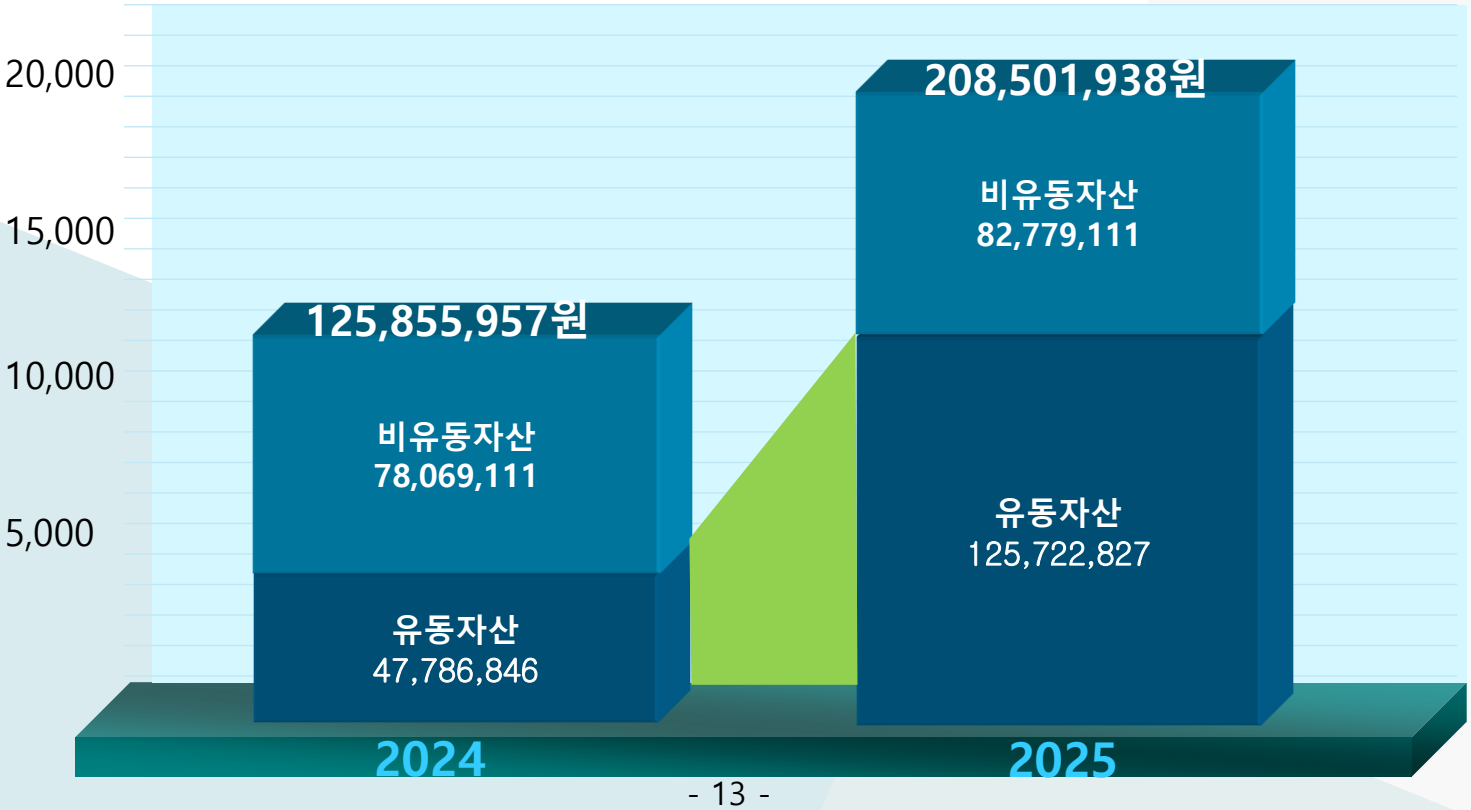

제2호 의안
2025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재무상태 요약

항목 (과목)	제2기(2024년)	제3기(2025년)	증감액	증감률
자산총계	125,855,957	208,501,938	+82,645,981	+65.67%
유동자산	47,786,846	125,722,827	+77,935,981	+163.09%
- 현금 및 현금성자산	31,603,272	101,351,133	+69,747,861	+220.70%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78,069,111	82,779,111	+4,710,000	+6.03%
부채총계	91,379,344	163,630,832	+72,251,488	+79.07%
- 시민펀드차입금	86,800,000	151,800,000	+65,000,000	+74.88%
자본총계	34,476,613	44,871,106	+10,394,493	+30.15%
- 자본금 (출자금)	39,650,000	48,850,000	+9,200,000	+23.20%
- 미처리결손금	5,173,387	3,978,894	-1,194,493	-23.09%

자본총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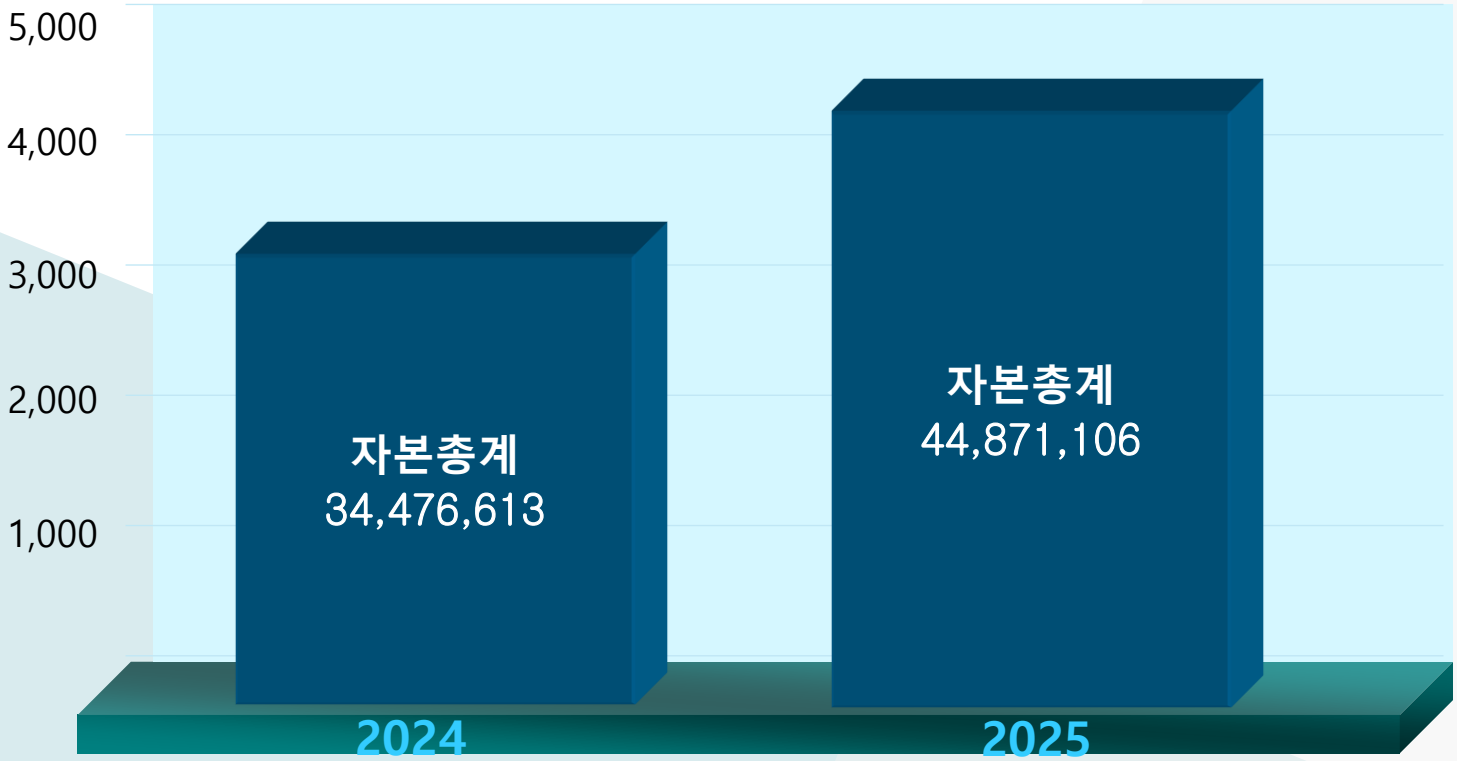

주요 재무비율 비교

구분 (지표명)	제3기 (2025)	제2기 (2024)	증감 및 평가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76.80%	52.30%	▲ 24.5%p (개선) 현금 보유량의 급증으로 단기 지급 능력이 강화됨
부채비율 (총부채 ÷ 총자본) × 100	364.70%	265.10%	▲ 99.6%p (상승) 시민펀드(외부 차입) 유치 확대로 부채 총액 증가
자기자본비율 (총자본 ÷ 총자산) × 100	21.50%	27.40%	▼ 5.9%p (감소) 자산 규모가 부채 중심으로 커지면서 자본 비중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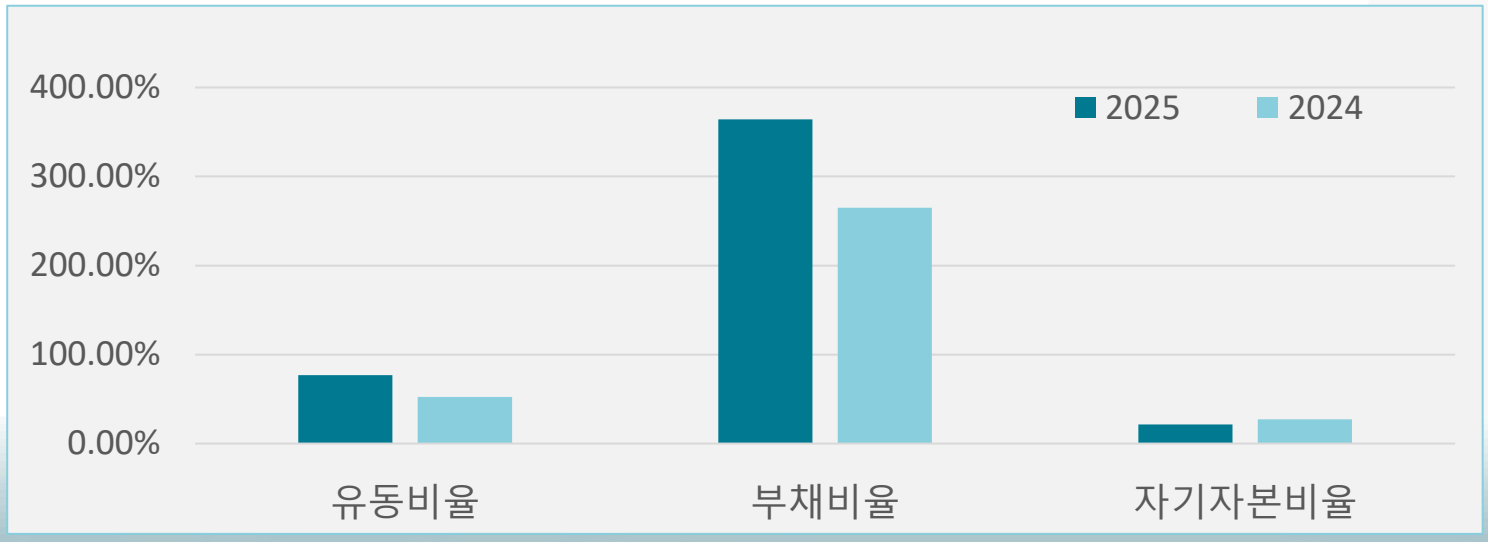

사진 : 새만금 태양광

제2호 의안
2025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손 익 계 산 서

제 3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2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단위 :원)

과 목	제 3(당)기		제 2(전)기	
	금 액		금 액	
Ⅰ. 매 출 액		19,225,319		16,104,562
전 력 판 매 수 입	19,225,319		7,086,288	
서 비 스 매 출			9,018,274	
Ⅱ. 매 출 원 가				
Ⅲ. 매 출 총 이 익		19,225,319		16,104,562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16,024,339		12,558,060
직 원 급 여	10,100,030		6,070,000	
잡 급	480,000			
외 주 용 역 비	700,000		900,000	
복 리 후 생 비	336,285		773,273	
여 비 교 통 비	28,780		11,700	
접 대 비	60,000		90,000	
통 신 비	542,453		753,000	
전 력 비	19,385		6,173	
세 금 과 공 과 금	774,960		835,450	
임 차 료	1,285,720			
보 험 료	304,270		169,990	
운 반 비	2,764		3,400	
도 서 인 쇄 비	285,000		6,637	
사 무 용 품 비	46,065		95,728	
소 모 품 비	400,225		547,381	
수 수 료 비 용	403,000		1,477,146	
광 고 선 전 비	245,455		818,182	
Ⅴ. 영 업 이 익		3,200,980		3,546,502
Ⅵ. 영 업 외 수 익		5,711,362		126,237
이 자 수 익	118,129		54,783	
잡 이 익	5,593,233		71,454	
Ⅶ. 영 업 외 비 용		7,717,849		3,255,026
이 자 비 용	7,717,079		3,255,000	
잡 손 실	770		26	
Ⅷ.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1,194,493		417,713
Ⅸ. 법 인 세 등				
Ⅹ. 당 기 순 이 익		1,194,493		417,713

제2호 의안
2025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6년 03월 31일
처분확정일 2025년 03월 31일

회사명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단위 :원)

과목	제 3(당)기		제 2(전)기	
	금액		금액	
Ⅰ 미처리결손금		3,978,894		5,173,387
1.전기이월미처분결손금	5,131,616		5,591,100	
2.회계변경의 누적효과	0		0	
3.전기오류수정이익	0		0	
4.전기오류수정손실	41,771		0	
5.중간배당금	0		0	
6.당기순이익	1,194,493		417,713	
Ⅱ 결손금 처리액		441,891		41,771
1.임의적립금 이입액	0		0	
2.그밖의 법정적립금 이입액	441,891		41,771	
3.이익준비금 이입액	0		0	
4.재평가적립금 이입액	0		0	
5.자본준비금 이입액	0		0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3,537,003		5,131,616

제3호 의안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에 관한 승인의 건

◆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호 의안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에 관한 승인의 건

2025 탈퇴 조합원 및 출자금 환급 청구 신청 현황

번호	탈퇴신청자	신청일	환급액	비고
1	석 * *	2025.05.09.	1구좌(금오만원)	총 2명 / 2구좌(금십만원)
2	채 * *	2025.07.10.	1구좌(금오만원)	

출자금 변동 현황보고

항목	'24.12.31.기준	'25 증가	'25 감소	'25 최종 확정	비고
총 조합원수	202명	65명	2명	265명	개인263/기업2
총 출자금	39,850,000원	9,000,000원	100,000원	48,750,000원	
1구좌당금액	50,000원	증좌 포함		50,000원	정관 기준

사진 : 충주호 태양광시설

제4호 의안
2026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4호 의안
2026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사 업 계 획

1 충주시민햇빛발전소 2호기(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설치공사

공사개요

- 위　　치 :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 시설용량 : 378Kw
- 총사업비 : 6억원

추진일정

7월~8월	8월	9월	10~11월
-전기사업허가신청 -설계	-펀드모집공고 -사업설명회 등	- 금융대출 - 한전 인허가	-시설공사 -준공식&운영관리
사업 계획 ·인허가(시청) 실시 설계	펀드모집공고 총사업비의51%이상 사업설명회 사업자 선정 개발행위 허가	공사 품질 관리 관계기관 인허가	준공검사 관계기관 검사 본격 발전 착수

제4호 의안
2026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2 충주시민햇빛발전소 3호기(두정매립지) 설치공사

공사개요

- 위　　치 : 두정 쓰레기매립지 일부
- 시설용량 : 300Kw
- 총사업비 : 3억9천만원

추진일정

3월~4월
-전기사업허가 변경신청
-개발행위신고·허가
-설계·착공

5월
-펀드모집 공고
-사업설명회 등

5월
- 금융 대출
- 한전 인허가

6~7월
-시설 공사
-준공식&운영관리

사업계획
실시설계
(투자분석)

펀드모집공고
총사업비의51%이상

사업설명회 및
홍보

설치 공사
공사 품질 관리
관계기관 인허가
서류 제출
(한국전력,에너지공단)

준공 검사
관계기관 검사
(한전,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계약
본격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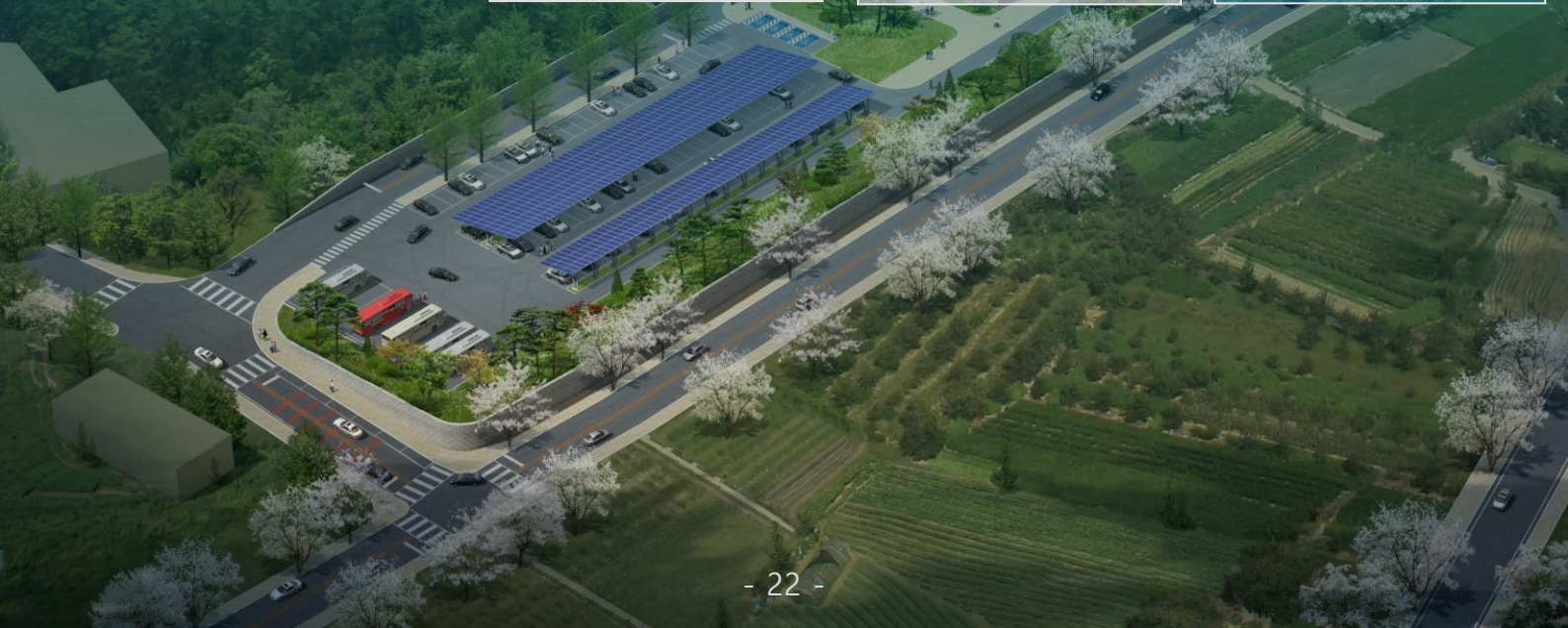

제4호 의안
2026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3 조직개편 및 역량강화

- 정규직 인력 확충 : 2명(시간제)
- 사무실 확보 : 에너지 효율화 사업, 도소매업, 기후보호환경 교육, 연구 컨설팅 사업 등

- 총회/소위원회에서 조합의 중요사항결정

- 조직강화 및 역량강화 위한 워크샵, 선진지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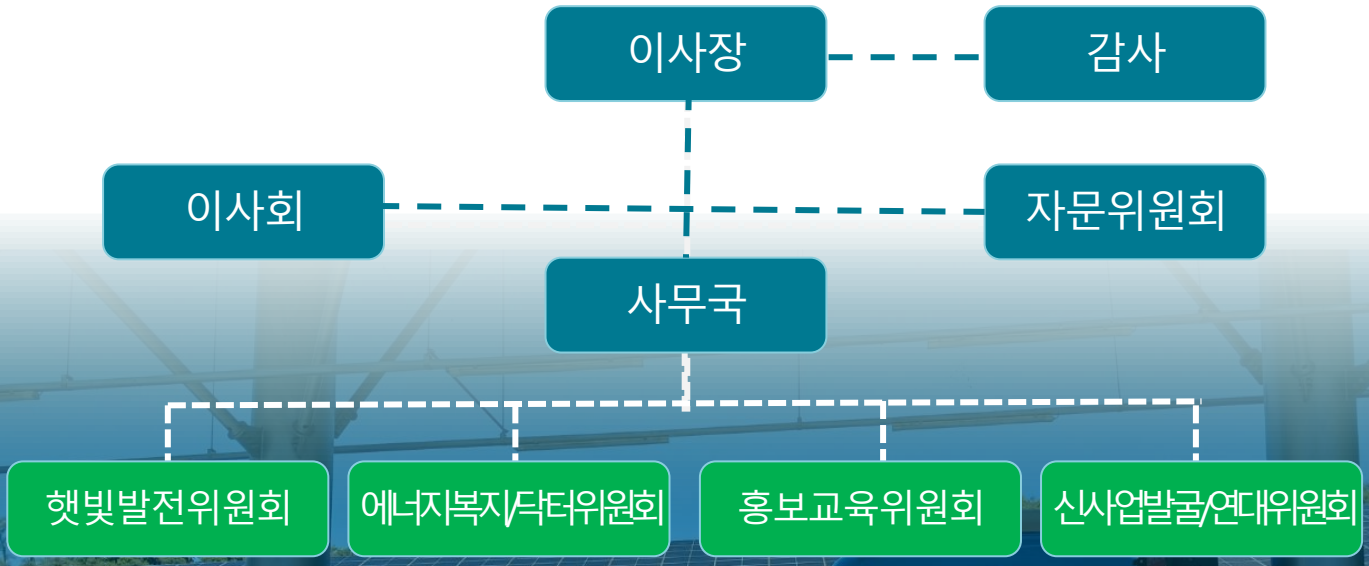

제4호 의안
2026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4 에너지복지 / 에너지닥터 사업

에너지복지 사업

❑ **저소득층 LED 등기구 교체사업 등 : 충주시 사업계획에 따라 협의 추진**

- 대　　상 : 에너지소외계층 50가구 이상
- 추진방법 : 읍면동 복지센터와 연계
- 지원범위 : 노후 등기구 무상 교체

에너지닥터 사업

❑ **충주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태양광(경로당 등) 일부 유지관리 위탁**

❑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관리부분에 한하여 우리 조합에서 준공공성 개념(재능기부, 봉사,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 수익창조**

공공기관
기업&시민단체

햇빛충주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제4호 의안
2026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5 기타사업

RE100 충주시민클럽 활성화

❑ 현재 가입 인원 : 1,494명

❑ 시민 홍보 및 동참, 잠재적 조합원 양성

사회적기업으로 진입

❑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진입 필요

❑ 수의계약이나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조기에 진입 필요

자립을 위한 사업 발굴

❑ 에너지 효율화 제품(물품) 도·소매업 : 2023년 정관 개정으로 사업 추가

❑ 기부금단체 등록 추진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검색

조합원마당 → 조합원 가입 → 신청서 작성 → 출자금 납입 → 가입 완료

출자 계좌수

1구좌 = 5만원

출자금입금계좌

신협:131-022-835950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제4호 의안
2026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예 산 안

수 입 (단위:원)				지 출 (단위:원)			
구 분		금액	구성비(%)	구 분		금액	구성비(%)
주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소건설및 운영사업	40,410,000	3.85	주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소건설및 운영사업	1,010,430,000	96.17
	기후보호, 환경 관련 교육, 연구 컨설팅 사업	0	-		기후보호, 환경 관련 교육, 연구컨설팅 사업	1,500,000	0.14
	RE100 충주시민 클럽 사업	0	-		RE100충주시민 클럽 사업	1,250,000	0.12
	에너지 효율화 제품(물품) 도.소매업	0	-		에너지 효율화 제품 (물품) 도.소매업	0	-
	재생에너지 시설(발전소등) 유지 보수 및 청소관리사업	2,970,000	0.28		재생에너지 시설(발전소등) 유지보수 및 청소관리사업	2,500,000	0.24
기타사업	조합원과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0	-	기타사업	조합원과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5,000,000	0.48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0	-		협동조합 간 협력을위한사업	1,000,000	0.1
	협동조합의홍보 및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업	4,800,000	0.46		협동조합의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5,000,000	0.48
	공공기관 (지자체등)에서 위탁 받은 사업	0	-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위탁 받은 사업	0	-
	출 자 금	12,500,000	0.46	경상비	인 건 비	12,000,000	1.14
	차 입 금	990,000,000	94.22		운영비 등	12,000,000	1,14
합 계		1,050,680,000	100	합 계		1,050,680,000	100

제5호 의안
임원의 선출에 대한 승인의 건

◆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임원의 선출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제5호 의안
임원의 선출에 대한 승인의 건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선거 실시 공고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제2대 임원 선거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 임원의 정수 : 이사장 1명, 이사 3명, 감사 1명

2. 선거 주요 일정
   - 후보 등록 기간 : 2026. 02. 19.(목) ~ 02. 20.(금) 09:00 ~ 17:00 (2일간)
   - 후보 자격 심사 및 확정 : 2026. 02. 21.(토)
   - 선거 공보물 공고 : 2026. 02. 21.(토) ~ 02. 26.(목)
     (조합 홈페이지 및 단체문자 발송)
   - 선거일 및 장소 : 2026. 02. 26.(목) 정기총회장

3. 후보자 및 선거인 자격
   - 후보자 자격 : 본 조합 정관 제49조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조합원
   - 선거인 자격 : 정기총회에 참석한 본 조합 대의원

4. 후보 등록 안내
   - 접수 방법 : 조합 사무국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 서류 : 임원 후보 등록 신청서 및 입후보 등록 승낙서, 추천서, 이력서, 출자증서,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서류 양식 및 접수 문의 : 사무국 010-7158-7324

2026년 2월 13일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신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규약 제15조에 의거하여,
제2대 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 임원 정수 : 이사 3명, 감사 1명
2. 후보 등록자 수 및 현황 : 이사 3명, 감사 1명

	구 분	성 명	비 고
입후보자 명단	이사	손창남	현) 이사장
	이사	임경산	현) 이사
	이사	전세진	현) 이사
	감사	신옥선	현) 감사

※ 우리 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이사장은 선출된 이사 중 호선을 통해 추천 및 선출될 예정입니다.

3. 선거인 : 제1기 대의원 27명
4. 선거 일시 : 2026년 2월 26일 (목) 정기 총회 시
5. 선거 장소 :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2026년 2월 21일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생략)

제1기 대의원 명단(2025년~2026년)

연번	성명	조합원번호	연번	성명	조합원번호
1	김경희	160	16	이영주	44
2	김병덕	6	17	이의성	52
3	김승우	129	18	이일성	242
4	김영신	2	19	이정범	138
5	김주식	115	20	주영욱	153
6	김학수	218	21	최순옥	142
7	노희경	75	22	최승호	99
8	박문애	76	23	최효정	163
9	박해성	58	24	한경석	4
10	배명한	127	25	한상호	80
11	손광희	9	26	한진상	84
12	손창국	89	27	홍기황	38
13	송해근	39			
14	신언호	49			
15	이영섭	126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정2022년 8월31일
개정2023년 10월12일

제1장총칙

제1조(설립과명칭)이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여설립하며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라한다.
제2조(목적)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지속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둘이상유형의조합원들이모여조합원의경영개선및생활향상과지역사회발전을목적으로하며에너지자원의 고갈과기후변화의시대를맞이하여충주지역에서에너지절약과자립체제를실천하고협동과평화의협동사회경제를실현하기위해햇빛등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확대함으로써쾌적하고지속가능한지역공동체를복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조합의책무)①조합은조합원등의권익증진을위하여교육훈련및정보제공등의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한다.
②조합은다른협동조합,다른법률에따른협동조합외국의협동조합및관련국제기구등과의상호협력이해증진및공동사업개발등을위하여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소재지)조합의주된사무소는충청북도충주시에두며이사회의의결에따라필요한곳에지사무소를둘수있다.
제5조(사업구역)조합의사업구역은충주시로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충청북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공고기간은7일이상으로하며,조합원의이해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에대하여는공고와함께서면으로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또는규정)조합의운영및사업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이정관으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규약또는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2장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교육 및 발전사업 등으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1개월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총회의결사항,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 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17조에서 같다)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까지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 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⑤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 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사업운영 및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기금
3. 기타 총회(또는 이사회)에서 부과 또는 징수하기로 한 비용
4. 공간 및 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때에는그의결로대의원자격을상실하게할수있다.이경우해당대의원에게서면으로자격상실이유를의결일7일전까지통지하고,총회또는대의원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1.대의원총회소집통지서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3회이상출석하지아니하거나대의원총회에출석하여같은안건에대한의결에2회이상참가하지아니한경우
2.부정한방법으로대의원총회의의사를방해한경우
3.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조합의명예또는신용을훼손시킨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매년1회회계연도종료후3개월이내에이사장이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이사장이소집한다.
1.이사장및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
2.조합원이조합원5분의1이상의동의를받아소집의목적과이유를적은서면을제출하여이사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3.감사가조합의재산상황이나업무집행에부정한사실이있는것을발견하고그내용을총회에신속히보고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이사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②이사장은제1항제2호제5조규정에따른해임요구를포함한다)및제3호의청구를받으면정당한사유가없는한2주이내에소집절차를밟아야한다.
③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소집을청구하였으나총회를소집할자가없거나그청구가있은날부터2주이내에이사장이총회의소집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감사가7일이내에소집절차를밟아야한다.이경우감사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④감사가제3항의기한이내에총회의소집절차를밟지아니하거나소집할수없는경우에는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소집을청구한조합원의대표가이를소집한다.이경우조합원의대표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소집절차) ①이사장은총회개최7일전까지회의목적안건일시및장소를정하여우편또는전자메일로각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이사장이궐위또는부득이한사유로총회를소집할수없는때에는제32조에서정하고있는순으로이를소집한다.
제33조의2(조합원제안권) ①조합원이조합원5분의1이상의동의를받아이사장에게총회일의2주전에서면으로일정한사항을총회의목적사항으로할것을제안(이하"조합원제안"이라한다)할수있다.
②이사장은제1항에의한조합원제안이있는경우에는이를이사회에보고하고,이사회는조합원제안의내용이법령또는정관을위반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총회의목적사항으로하여야한다.이경우조합원제안을한자가청구하면총회에서그제안을설명할기회를주어야한다.

제33조(총회의의결사항)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1.정관의변경
2.규약의제정과변경또는폐지
3.임원의선출과해임
4.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5.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또는손실금처리안등을말한다.이하같다)의승인
6.감사보고서의승인
7.협동조합의합병·분할·해산·휴업또는계속
8.조합원의제명
9.탈퇴조합원(제명된조합원을포함한다)에대한출자금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5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상임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7.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이내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등 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5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제1항~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임원으로서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2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의 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⑤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조합은 결산 결과의 공고 등 운영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 <개정 2023.10.12>
2. 기후보호, 환경 관련 교육, 연구 컨설팅 사업
3. RE100 충주시민클럽 사업
4. 에너지 효율화 제품(물품) 도·소매업 <신설 2023.10.12>
5. 재생에너지 시설(발전소 등) 유지 보수 및 청소관리 사업 <신설 2023.10.12>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위탁 받은 사업 <신설 2023.10.12>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지역사업형)'이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⑤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1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

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회계

제63조(회계연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4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5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상호부조 사업

제66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부 칙
이 정관은 소관부처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인

2025 기록

사회적기업 현장실사

제1호 발전소 1주년 기념 간담회

시장님 면담

임원 회의

2025 정기대의원총회 개회

2025 정기대의원총회 기념촬영

자원봉사자 교육 참여

사회단체연대 제초작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대

재래시장 쓰레기절감 캠페인

우륵문화제 홍보부스

현수막 홍보

(펀드약정이자 7%)

조합원모집 홍보

제로웨이스트 물품후원

(충주시노인복지관)

Alone We can do so little, Together We can do so much

우리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정말 적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많다.
_ 헬렌 켈러 _

에너지소외계층
LED등 교체

햇빛발전소
환경 정비